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07.4.25>									(앞	쪽)
대장번호		확 인 신 청 서							처리기간	
		의 한 전 정 시					14일			
① 신청인	②성 명		③주민등록번호							
			(전 화 :						)	
	④주 소		(휴대전화:						)	
			(E-mail:						)	
		⑤입사일	년	월	일	⑥임금지	급일		매월	일
⑦ 대 상 사업주	(5	3)사업장명				9전 화 변	번호			
		ツィロ O O				휴 대 전	· 화			
	10	대표자성명				⑩상시근로자수				
	(1	②소 재 지								
(3) 확 인 신 청 사 항	1.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									
	2.	2.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								
	3.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									
	급액									
	4.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									
	5.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월 이상 당해 사업을									
	행한사실(파산선고등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 한합니다.									
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										
이 확인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너 위 이										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## ○○지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구비서류 : 1.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(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,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 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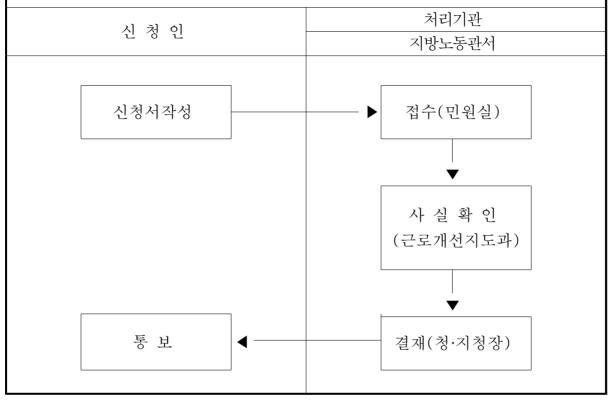
수수료 없 음

2.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 1부(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 가 아닌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,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)

## ※ 기재요령

⑤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기재하며, ⑥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며, ⑦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※ 공지사항 :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